

# 2025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계획

이천단월초등학교

##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조치사항

###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함.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2. 교육활동 침해 기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침해행위 유형	개념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8장)	직무를 집행하는 국·공립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행위자의 행위목적은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를 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형법」 제2편 제314조)	사립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문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으로 방해하는 행위
무고의 죄(「형법」 제2편 제11장)	교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 고의로 교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폭행: 교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 행위
협박의 죄(「형법」 제2편 제30장)	교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공연(公然)(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히 교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p>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교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公然)히 표현하는 행위</p>
<p>손괴의 죄(「형법」 제2편 제42장)</p>	<p>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p>
<p>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p>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행위로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p>
<p>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p>	<p>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등: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p>
<p>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p>	<p>「교원지위법」에 침해유형으로 규정된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범죄 행위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교원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p>
<p>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p>	<p>학교 교육활동(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대한 보호자의 정당한 참여를 넘어서 교원을 괴롭힐 목적 또는 특혜 요구 등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p>
<p>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p>	<p>교사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p>
<p>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p>	<p>성적 언동 등(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p>
<p>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p>	<p>적법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적 판단과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p>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학생의 행동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교사의 지시 및 생활지도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 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보호조치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 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II.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추진 계획

###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 (실시 시기) 4월, 8월
- (운영 방법)
  - 자체연수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 현황
  -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조치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 2.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육 대상) 학생 전체
- (실시 시기) 4월
- (운영 방법)
  - 관련 교과 또는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별 실시
  -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D3XNvAFnks0>)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3.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3월
- (운영 방법)
  - 학부모 총회 연수 자료 안내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 동영상 주소 홍보  
([https://youtu.be/o6NLH4\\_5zLk?si=C10kzARFywasar9a](https://youtu.be/o6NLH4_5zLk?si=C10kzARFywasar9a))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한국교육개발원

##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 2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 ● 배움과 실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내면화·인격화하는 과정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 ●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지도에 매진할 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 례
공무방해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공립학교의 학부모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닦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유형	사 례
업무방해	<p>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의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위력을 보여 위협하는 경우</li> </ul>
무고	<p>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촌지를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li> </ul>
상해/폭행	<p>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li> <li>•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li> </ul>
협박	<p>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의 가족 등 교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li> </ul>
명예훼손, 모욕	<p>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개인의 가정사를 유포하는 경우</li> <li>•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학생들 간 단톡방에서 교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li> </ul>
손괴	<p>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li> </u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p>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li> <li>• 교사의 얼굴을 촬영·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 및 합성물을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li> </ul>
불법정보 유통	<p>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는데 학생이 원격수업 화면에 음란물을 상영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에도 해당됨)</li> <li>• 교사와 상담하던 도중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li> </ul>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li> <li>• 학생이 교원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낸 뒤, 주소지에서 허락 없이 기다리거나 주소지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li> </ul>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p>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교육활동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li> </ul>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p>교사의 직무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원하는 특정 문구를 포함하여 변경, 수정 작성하도록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li> </ul>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의 동의 없이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li> <li>•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행위</li> <li>•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li> </ul>

유형	사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p>학생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폰을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li> </ul>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원격수업 중일 때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톡방에 무단 배포한 경우</li> </ul>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보호자 함께 참여,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 ●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위 조치 중 ②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 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는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나 문자, 학교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전 약속을 하고 가급적 근무 시간 중 학교에 방문합니다.
-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한 경우에도 선생님이 수업 중이거나 업무 중일 때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수업 중인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밤늦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 단체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학교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동영상 주소  
[https://youtu.be/o6NLH4\\_5zLk?si=C10kzARFywasaR9a](https://youtu.be/o6NLH4_5zLk?si=C10kzARFywasaR9a)